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-12호

「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 조례」가 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』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1월 19일

#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#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 조례안 예고

#### 1. 제정이유

대전광역시 소재 특수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# 2. 주요내용

- 가.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 도록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시설 확충에 관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조).
- 나.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특수교육기관 설립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함 (안 제4조).

- 다.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정함(안 제5조).
- 라.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 시회로 구분하고, 정기회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정함(안 제6조).
- 마.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함(안 제7조).
- 바. 위원의 해촉 사유 및 보고서 제출 의무를 정함(안 제8조 및 제9조).

#### 3. 의견제출

- 가.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(참조 : 교육수석전문위원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의견제출 사항
  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  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・주소・전화번호
- 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5242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수석전문위원실)

(전화 042-270-5243, FAX 042-270-5249, E-mail : bokdung@edurang.net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# 4. 제정 조례안 : 붙임

#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재 특수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」에 따른다.
- 제3조(교육감의 책무) 대전광역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대전광역시 소재 특수교육기관 설립 및 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함으로써,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의 설치) 교육감은 특수교육기관 설립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 관설립준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  - 1. 특수교육기관 설립 일정
  - 2. 특수교육기관 설립 위치
  - 3. 특수교육기관 설립 규모·운영 등 사업방향
  - 4. 특수교육기관 설립에 소요되는 재정총액 및 재정확보 방안
  - 5. 대전광역시 소재 특수교육기관의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
  - 6. 그 밖에 특수교육기관 설립 및 시설 확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5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-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, 교육국장, 행정국장이 되고,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.

- 1. 대전광역시 지역구 국회의원
- 2.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
- 3. 법률, 건축, 회계, 의료 분야의 전문가
- 4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- 5. 그 밖에 특수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제6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 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, 정기회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.
  -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,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  -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.
  - 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7조(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제8조(해촉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 - 1.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
  - 2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

- 3.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된 때 제9조(위원회 활동 결과보고) 위원회는 연 1회 제4조에 따른 심의 결과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운영세칙)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법령

# 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
- 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.
  - 1.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
  - 2.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
  - 3.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
  - 4. 특수교육의 내용,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·개선
  - 5.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
  - 6.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의 수립
  - 7. 특수교육기관의 설치·운영 및 시설·설비의 확충·정비
  - 8.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·교구의 연구·개발 및 보급
  - 9.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
  - 10.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방안의 강구
  - 11.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
  - 12.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
  - ③ 국가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.
  -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 부장관·고용노동부장관·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.

# □ 교육기본법

제18조(특수교육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·정신적·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·경영하여야 하며,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# □ 지방자치법

- 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